

정 책 세 미 나

TAX

공정하고 혁신적인
암호자산 세제를
디자인하다

TAX

주최 국회의원 **최교일** | 블록체인법학회 | 한국블록체인협회 |  coindesk
KOREA

후원  UPbit  coinone  GOPAX  Hanbitco

정 책 세 미 나

공정하고 혁신적인
암호자산 세제를
디자인하다

TAX

TAX

2020. 2. 21. **금요일** | 오후 2시 ~ 5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최교일** | **블록체인법학회** | **한국블록체인협회** | 

후원 **UPbit**  **coinone** **GOPAX**  **Hanbitco**

CONTENTS

개회사

- 004 **암호자산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를
새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기조발표

- 006 **암호화폐 회계기준 개관**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 022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과세의 법률적 쟁점**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위 위원
- 052 **암호자산 과세의
조세법적 제문제**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

토론

- 토론자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
서연희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최호창 한빛코 준법감사인

암호자산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를 새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공정하고 혁신적인 암호화폐 세제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엽 부장판사입니다. 오늘 중요하고도 긴급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치 아래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가치생산조직은 스스로 디지털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혁명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가치이전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제 디지털 플랫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금이란 무엇이고, 세금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블록체인혁명은 인류에게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 공정한 과세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의무는 납부한 조세가 납세자가 속한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혹은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오프라인에서의 국가의 구성원들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구성원(노드)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디지털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라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검색의 대부분을 구글이 차지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구글이 유럽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가 미국에 있고, 네트워크플랫폼의 유저가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미국과 소득이 발생한 국가 모두가 과세할 수 있는지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 자체에 과세할 수 있는지도 역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에서 더 나아가 블록체인네트워크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조달목적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문제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라 불리는 코인, 토큰도 모두 가상자산, 혹은 암호자산으로 보아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세 체계에서는 수익을 올리는 법적주체인 회사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는 이상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만들어지는 블록체인네트워크에서는 중앙이 없어 누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네트워크 위에 같이 존재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국적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전통적인 법인세나 소득세를 구성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고도 가능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암호자산 생태계의 성장은 인류의 부를 획기적으로 성장시켜 줄 것이고, 우리 사회를 네트워크정보사회로 진화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그에 맞게 새로이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과세제도를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최고일 국회의원님,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데스크코리아, 블록체인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암호화폐 세제 마련을 위한 세미나'는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네트워크정보사회로 진보하기 위하여 암호화폐, 암호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세제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좋은 토론과 논의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최고일 국회의원님,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유신재 편집장님, 코인데스크코리아 김동환기자님, 코인데스크코리아 이수정 매니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어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는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님,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님, 김용민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님, 서연희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님, 최호창 한빛코 준법감시인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제목과 같이 공정하면서도 혁신적인 암호화폐,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제도가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2. 21. 블록체인법학회장 **이정엽**

기조발표 ①

암호화폐 회계기준 개관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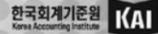
가상통화 회계처리 개관

KAI

We bring the finest expertise and insight to our work.
We maintain our independence and fairness.
We are transparent in our decision-making process.
We pursue honesty and integrity.
We trust, communicate openly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2020. 2

이 내용은 세미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한국회계기준원 또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논의 대상 ?

암호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암호토큰, 코인...?

Crypto asset



Cryptocurrency

- 디지털형식으로 물리적 형태 없음
- 정부 등에서 발행하지 않음
-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있으며 조작이 어려움
-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지 않음

Crypto token

- 거래 가능한 자산 또는 효용을 나타내는 특정 대체물

(Investopia, IFRS IC '18.9 AP 4)

논의 대상은 Cryptocurrency이며, '가상통화'로 용어 사용

World-class accounting standard-setter,
leading the way to a more transparent economy

3



구성

Korea Accounting Institute

1. 논의 대상 ?
2. IFRS 적용시 회계처리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회계처리
4. 일부 국가의 회계처리 참고
5. 2020 Agenda consultation



1. 논의 대상 ?

거래 측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투자자



보유(Holding)



중개기관



발행자(ICO*)

* ICO: Initial Coin Offerings
단, 우리나라의 경우 ICO금지

채굴(Mining)

본 논의는 가상통화를 보유(Holding)한 경우의 회계처리 위주로 설명

World-class accounting standard-setter,
leading the way to a more transparent economy

4



1. 논의 대상 ?

☑️ 보유자의 사업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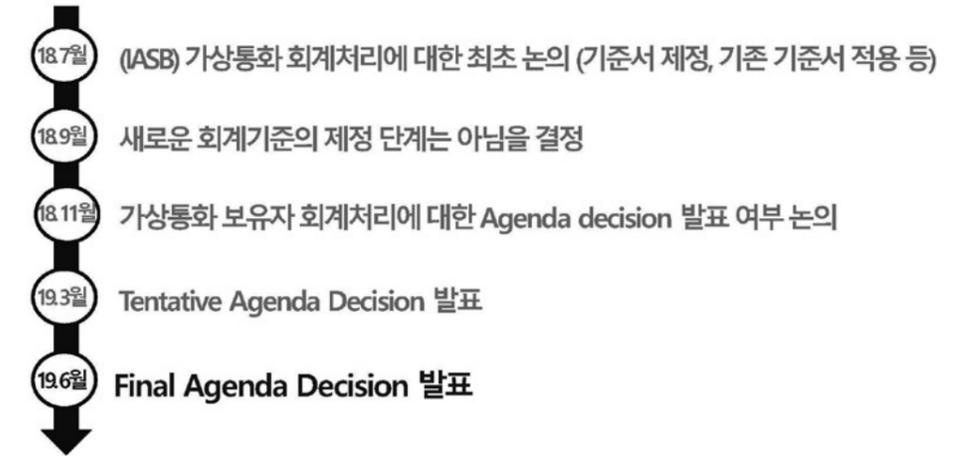
보유자가 개인인지 혹은 법인인지에 따라 회계처리와 적용 세법이 다름

	회계처리	적용 회계기준	적용 세법
개인	불필요* <small>*단, 세액 산출을 위해 관련 자료 및 증빙 보관 필요</small>	N/A	소득세 ▶ 양도소득세? 기타소득?
법인 비상장 상장	필요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법인세 ▶ 미실현손익과세?

본 논의는 법인이 가상통화를 보유한 경우의 회계처리임

2. IFRS 적용시 회계처리

📄 IFRS IC(해석위원회) 논의 경과



IFRS적용시, 가상통화 보유자는 IFRIC의 해석을 참고하여 회계처리 필요

2. IFRS 적용시 회계처리

📄 회계정책 개발사항인지 여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 작성가능(IAS8.10)



따라서 가상통화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할 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회계처리가 다를 수 있음

2. IFRS 적용시 회계처리

❓ IFRS IC 논의 내용: (1) 금융자산

🤝 계약상 권리 (K-IFRS 1032.11)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아님 충족 여부 ❌

❓ 논의 내용: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현금 (K-IFRS 1032.AG3)
현금은 교환의 수단을 의미하나, 가상통화는 교환의 수단으로 널리 인정받지 못하며, 법정통화가 아님 ❌

💰 현금성자산 (K-IFRS 1007.6)
현금성자산은 확정된 금액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이 경미하여야 하나, 가상통화는 가치변동위험이 큼 ❌

2. IFRS 적용시 회계처리

? IFRS IC 논의 내용: (3) 무형자산

(K-IFRS 1038.8)



비화폐성자산

확정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 의무가 아님

충족 여부



식별가능성

물리적 실체가 없고, 보유자로 부터 분리하여 판매가능



미래경제적 효익

매각을 통하여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



가상통화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함

2. IFRS 적용시 회계처리

💡 주요 회계처리 : (1) 무형자산

🔍 최초 인식 (K-IFRS 1038.24)

- ▶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함

🔍 인식 후의 측정방법의 결정 (K-IFRS 1038.72)

- ▶ 무형자산의 유형별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선택 가능
- ▶ 재평가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 실시
- ▶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인식하며,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K-IFRS 1038.85~86)

2. IFRS 적용시 회계처리

? IFRS IC 논의 내용: (4) 재고자산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 보유 (K-IFRS 1002.6)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가상통화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함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무형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무형자산 기준서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K-IFRS1038.3)

충족 여부



결론

가상통화 보유목적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에 위한 것이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함

2. IFRS 적용시 회계처리

💡 주요 회계처리 : (1) 무형자산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평가 (K-IFRS 1038.88)

- ▶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반영하여 상각
- ▶ 단, 투자목적 가상통화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

🔍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 (K-IFRS 1036.10)

- ▶ 손상징후가 있거나, 없더라도 일 년에 한번은 손상검사 수행
- ▶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K-IFRS 1036.59~60)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경우, 손상차손환입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재평가자산의 경우, 과거에 손상차손을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며, 이외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K-IFRS 1036.119~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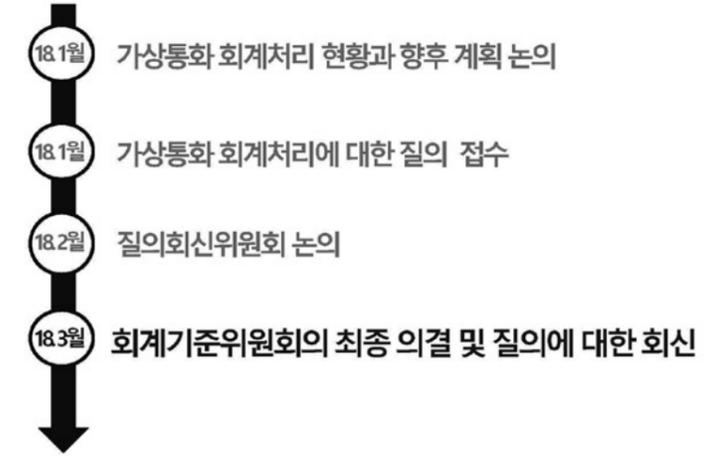
2. IFRS 적용시 회계처리

💡 주요 회계처리 : (2) 재고자산

-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K-IFRS 1002.9)
 -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직접노무비), 기타원가(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원가)를 포함
 -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는 경우,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함** (K-IFRS 1002.25)
 -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며 평가손실은 당기비용으로 인식** (K-IFRS 1002.28~34)
 -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며,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 환입** (K-IFRS 1002.33)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회계처리

① 국내 논의 경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질의회신을 참고하여 회계처리 필요

2. IFRS 적용시 회계처리

💡 발행자(ICO: Initial Coin Offerings) 회계처리 (IFRS IC '18.9, 4C)

기업의 약정사항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르므로, 거래에 대한 분석이 필요

- 📄 **자본 (IAS32)**
보유자가 발행회사의 잔여지분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경우
 - 🤝 **금융부채 (IFRS9)**
발행회사가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
 - ⚡ **비금융부채 (IAS37)**
보유자와 제3자의 거래에서 발행회사에게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 👥 **수익 (IFRS15)**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 🔍 **이 외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서가 없는 경우, 회계정책 개발(IAS8)**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회계처리

? 논의 내용

무형자산 정의에 따르면...

(11장 용어의 정의)

조건	내용	충족 여부
조건 1	보유 목적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	✗
조건 2	자산의 특성 식별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 비화폐성 자산	✓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임대 사용 목적으로
가상통화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무형자산이 아님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회계처리

? 논의 내용

	충족 여부
금융자산 (6장 용어의 정의)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아님	✗
현금 및 현금성자산 (2장 용어의 정의, 2.35) 가상통화는 교환의 수단으로 널리 인정받지 못하며, 법정통화 아님 또한 가치변동의 위험이 큼	✗
재고자산 (7.3) 주로 교환 및 지불의 수단으로 이용됨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이 아님	✗

결론

가상통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없으므로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 작성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회계처리

💡 회계정책 개발시 참고사항

- | | |
|-------------------------------------|--|
| 후속 측정
(20.4, 20.8, 20.10) | ▶ (활성시장 有)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 |
| | ▶ (활성시장 無) 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손상검사 수행
- 회수가능액(처분예상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을 손실로 인식 |
| 주식 공시
(24.6, 24.12) | ▶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가상통화 공정가치 하락내역 공시 |
| | ▶ 그 밖에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추가 정보 |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회계처리

💡 회계정책 개발시 참고사항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규정, 개념체계 등을 고려하여 회계정책 개발필요

재무제표 표시 (2.18, 2.20)

- ▶ 현금성자산 등으로 실현될 시점과 보유목적에 고려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
- ▶ 가상통화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명으로 표시

최초 인식 및 측정 (개념체계 90, 140)

- ▶ (활성시장 有) 취득시점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
- ▶ (활성시장 無)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 충족여부 판단 필요
 -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자산으로 인식
 -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

4. 일부 국가의 회계처리 참고 사례

① 일본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가상통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18.3)

금 자산	현금 ✗ 현금성자산
무 자산	재고 ✗

- ⚙️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시장가격으로 평가 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
- ⚙️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

4. 일부 국가의 회계처리 참고 사례

① 프랑스

토큰(Token) 발행자와 보유자의 회계처리를 발표('18.10)

(1) 발행자 회계처리 → 약정한 의무에 근거하여 회계처리

 유가증권 또는 지분상품과 유사한 성질의 토큰
유사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적용

 그 밖의 토큰

- ▶ Debt인 경우, 부채로 인식
- ▶ 미래 용역 제공이나 재화의 이전을 약속한 경우, 수익을 이연하여 인식
- ▶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즉시 수익을 인식

 토큰 발행금액은 구매자들이 지급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다른 토큰으로 지급 시에는 시장가치로 측정

4. 일부 국가의 회계처리 참고 사례

① 미국

AICPA는 US GAAP에서 가상통화 회계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물을 발행('19.12, Accounting for Auditing of Digital Assets)

 금 자산

 현금 및  금성자산

 무형자산

 재고지 

IFRS와 차이

▶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보유하더라도, '유형'의 자산만 재고자산으로 분류 가능함. 따라서 재고자산으로 분류 불가함 (FASB ASC Master Glossary)

4. 일부 국가의 회계처리 참고 사례

① 프랑스

(2) 보유자 회계처리 → 보유 의도에 따른 회계처리

 사용목적 보유
무형고정자산(intangible fixed asset)으로 인식

- ▶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
- ▶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

 투자목적 보유

- ▶ 투자항목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
- ▶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실현될 때까지 이연
- ▶ 단, 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

4. 일부 국가의 회계처리 참고 사례

① 미국

AICPA의 발간물은 가상통화의 분류 이외에도 최초 인식 이후 등의 회계처리를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음

? 후속 측정(손상)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으로 분류 후, 매년(혹은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테스트를 수행함

 단, 후속적으로 손상환입은 금지됨 (FASB ASC 350-30-35-20)

IFRS와 차이

▶ IFRS에서는 영업권의 손상차손 환입만 제한됨 (K-IFRS 1036.124) 따라서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가상통화의 손상차손 환입이 가능함

5. 2020 Agenda consultation

① 가상통화 회계처리에 대한 제안 ('19.12, ASAF)

경제적 실질을 보다 충실히 나타내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을 위해...

단기적 제안

② IAS 38의 적용범위 수정 (좁은 범위의 개정)

- 투자목적 무형자산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무형자산의 정의 수정

장기적 제안

③ 투자목적 무형자산을 다루는 별도의 IFRS 기준서 제정

② 향후 일정

IASB는 2020년 9월에 정보요청서(RFI)를 발표하여 공식의견 수집절차 예정임

Thank You

Korea Accounting Institute

We bring the finest expertise and insight to our work.
We maintain our independence and fairness.
We are transparent in our decision-making process.
We pursue honesty and integrity.
We trust, communicate openly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기조발표 ②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과세의 법률적 쟁점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위 위원

암호화폐 과세

- 불복절차 개관과 법률적 쟁점 -

법무법인(유한)바른 한서희 변호사



I. 들어가며



목차

- I. 들어가며
- II. 과세처분 및 불복 절차
- III. 과세 소송 법률적 쟁점(빗썸 사례)
- IV. 결론



2

1. 우리나라 조세 원칙

조세법률주의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는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

이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함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남용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의 기하는데 의의가 있음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로 요약됨



4

1. 우리나라 조세 원칙

과세요건 법정주의

국가의 조세 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의 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시기·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함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서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함

1. 납세자 구제제도

납세자의 권리 구제 제도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 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사전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사전 권리 구제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거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기

II. 과세처분 및 이의제기 절차

1. 납세자 구제제도

사전 권리 구제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는 장래 결정할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세무당국 내부적인 절차로 1차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종류

- 채택결정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일부가 인정될 경우는 일부 채택 결정
- 불채택 결정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심사제외 결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보완요구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

○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답변불채택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 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1. 납세자 구제제도

사후 권리 구제 제도

○ 방법 1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 절차로서 **이의신청한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이를 "기각"이라 합니다)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음

※ **임의절차란?** :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절차

○ 방법 2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방법

○ 방법 3 : 위의 방법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방법임.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

1. 납세자 구제제도

사후 권리 구제 제도 - 방법2 (심사청구 제도)

○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과세표준 및 세액, 가산세 등에 대한 경정을 요구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국세청장에게 제기(국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 불복청구기한 90일; 결정기간도 90일.

➢ 90일의 결정기간 경과 전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9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한 날 즉시 제기하거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음

1. 납세자 구제제도

사후 권리 구제 제도 - 방법1 (이의 신청 제도)

○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본안심리 없이 '각하'결정을 내리게 됨

○ 결정기간은 30일.

➢ 30일의 결정기간 경과 전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

➢ 3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날 즉시 제기하거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음

1. 납세자 구제제도

사후 권리 구제 제도 - 방법3 (조세심판청구 제도)

○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

○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지방세는 9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사이버심판청구 가능),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1. 납세자 구제제도

사후 권리 구제 제도 - 방법3 (조세심판청구 제도)

-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여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지하며 90일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90일 초과시점부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
- 심판결정은 교수·변호사 등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여 합의제로 결정

1. 납세자 구제제도

사후 권리 구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시 '결정'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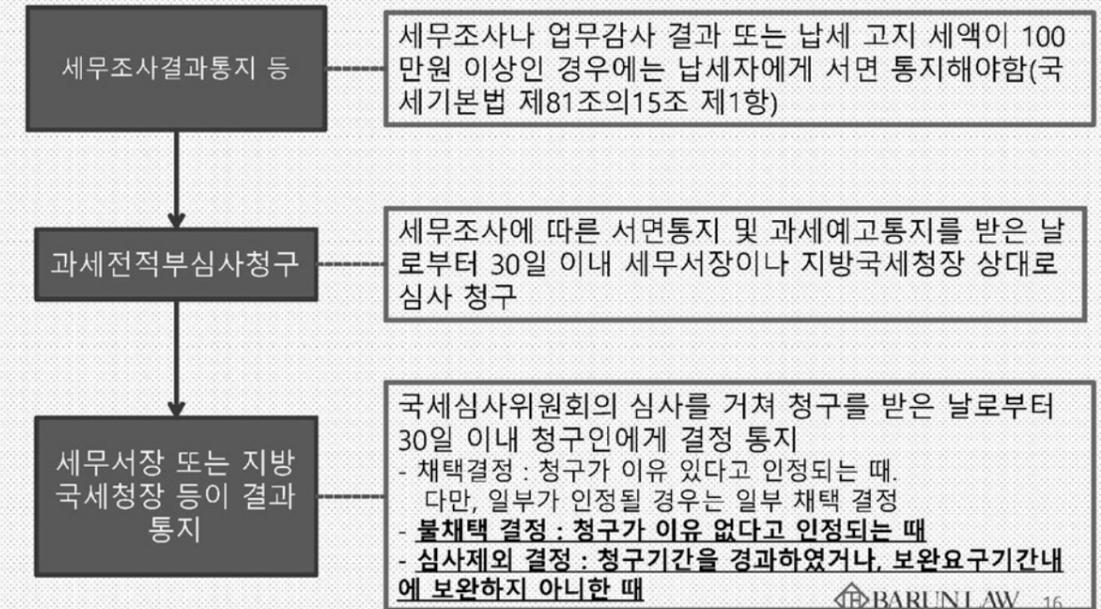
-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기각 결정
-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내림
- '각하'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때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처분의 부존재)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1. 납세자 구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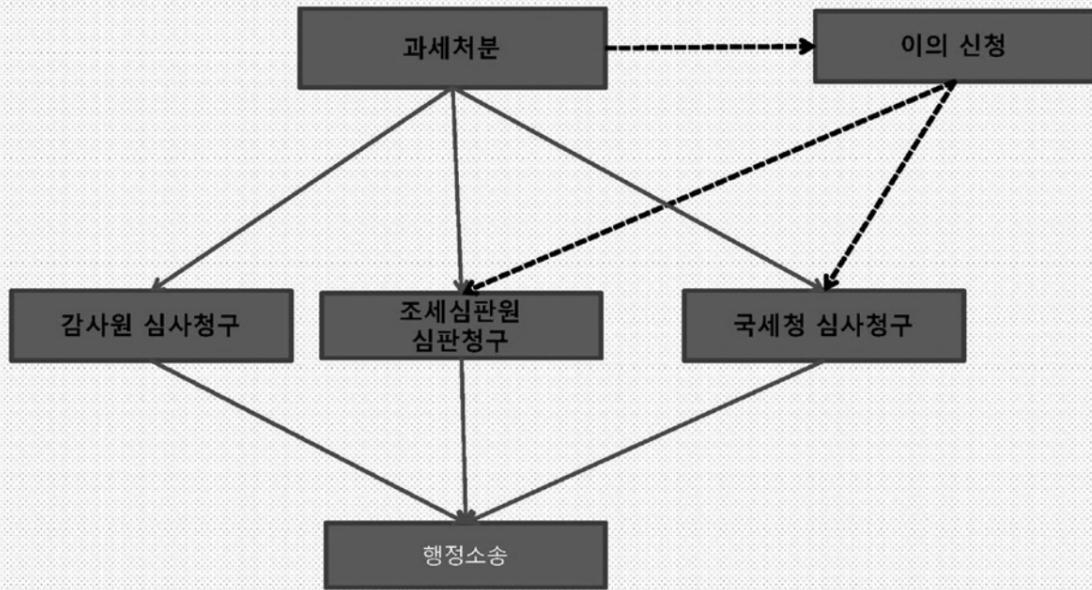
사후 권리 구제 제도 - 방법4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피감사기관)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국세청·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의 피감사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청 등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감사원법 규정에 의하여 가능
- 과세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함
 -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사건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국세청 등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으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납세자 구제제도- 처분 통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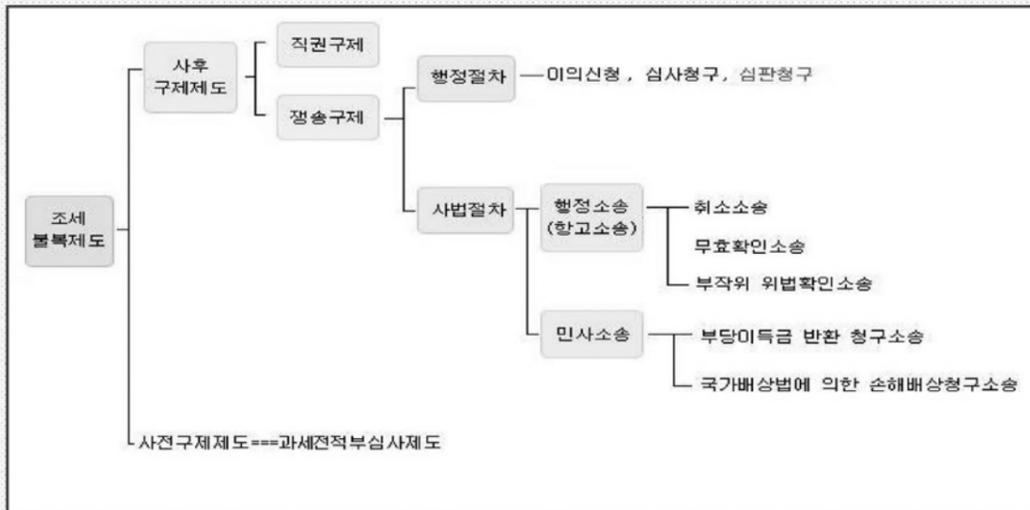


3. 납세자 구제제도- 처분 통지 후



Ⅲ. 과세 소송 법률적 쟁점 (빗섬 사례)

4. 종합 정리



조세불복제도의 유형(조세심판원 홈페이지) <https://www.tt.go.kr/mUser/guide/typeList.do>

1. 사건의 경과

사건의 경과

- 국세청은 지난해 1월 빗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함
 - ▶ 빗섬을 통해 암호화폐(이하에서는 “가상통화”)를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로 출금해 간 금액(원화 예수금 출금 합계액 전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빗섬에 세금을 부과한 것
- 국세청측은 이 과정에서 국내인과 달리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국내에서 발생한 자산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적용함
 - ▶ 소득세법 119조 12호 마목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또는 같은 호 카목에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함

2. 사건의 쟁점

쟁점 1- 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중략) ...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거래소를 통하여 가상통화를 매매하여 실현한 거래이익은 소득세법 21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음. 즉,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

2. 사건의 쟁점

쟁점 2-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 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거래소를 통하여 가상통화를 매매하여 실현한 거래이익은 ① 소득세법 119조 12호 마목의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동조 카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

○ 국세청 반론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해당)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 119조 12호 마목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또는 같은 호 카목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2. 사건의 쟁점

쟁점 2-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국내 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 관련 규정(구소득세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카목의 대통령령은 존재하지 않음

2. 사건의 쟁점

쟁점 2-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국내 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 **소득세법 제119조의 비거주자에 대한 기타소득 ?**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소득의 종류를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에 열거·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내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둘째,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에서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국세청 발간 등록번호(11-1210000-000083-14)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 과세제도 해석 제23면

2. 사건의 쟁점

쟁점 2-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국내 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 소득세법 제119조의 비거주자에 대한 기타소득 ?

1. 기타소득의 범위

조세조약상 기타소득(other income 또는 income not expressly mentioned)이라 함은 당해 조세조약의 각 조항에서 취급되지 않은 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의 기타소득의 범위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아니한 종류의 소득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아니한 원천의 소득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관한 조세조약의 조항은 양쪽 계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되지 않고 제3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whenever arising).

그러므로 조세조약에서 기타소득의 개념은 우리나라 국내법상 기타소득과는 그 범위가 다릅니다. 즉, 조세조약상의 기타소득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국내세법상의 기타소득은 기타 소득으로서 열거된 소득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국세청 발간 등록번호(11-1210000-000083-14)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 과세제도 해석 제325면**

2. 사건의 쟁점

쟁점 2-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국내 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 소득세법 제119조의 비거주자에 대한 기타소득 ?

▶국세청 반론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무체물 모두가 재화에 해당함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아이템 거래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도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무체물을 의미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2011두30281), 가상통화 역시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형태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음

2. 사건의 쟁점

쟁점 2-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국내 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 소득세법 제119조의 비거주자에 대한 기타소득 ?

▶가상통화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12호 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12호 마목의 '자산'은 "인허가로 인해 부여된 권리" 및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이란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리가능한 유체물이어야 할 것임.

-반면, 가상통화는 실체가 없는 무체물에 해당하고, 관리가능성도 없어서 재물성이 부인되어야 하므로(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 2884판결 참조)'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 2884판결에서는 "재물"이 아니므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 2018. 2. 26. 선고 2018도3619 판결의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가 인정되었음. 따라서 가상통화의 재물성은 여전히 부정된다고 보아야 함

2. 사건의 쟁점

쟁점 2-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국내 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 소득세법 제119조의 비거주자에 대한 기타소득 ?

▶소결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카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열거주의에 따라서 과세근거가 되기 어려울 것임

2. 사건의 쟁점

쟁점 3- 과세요건 (비거주자, 과세표준) 에 대한 입증 책임

○ 입증책임 기본 법리

▶ 원칙

과세처분의 실제적·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존재함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 증명강도의 완화 및 입증필요의 전환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입증의 필요성을 전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만한 간접적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2. 사건의 쟁점

쟁점 3- 과세요건 (비거주자, 과세표준) 에 대한 입증 책임

○ 비거주자의 거래에 대해 과세가 된 것인지 여부

▶ 국세청 반론

납세의무자 지배영역 내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이 있다는 주장

①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②그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기에 곤란한 경우, 그 증명 곤란 또는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그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2010 두4599)

2. 사건의 쟁점

쟁점 3- 과세요건 (비거주자, 과세표준) 에 대한 입증 책임

○ 비거주자의 거래에 대해 과세가 된 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국세청은 핸드폰 번호를 통해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였음

▶ 쟁점

비거주자라는 점은 소득세법상 ①빗썸 회원가입시 소유자의 익명성 보장이 라는 가상통화 속성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만 스스로 구분하도록 하면서 휴대폰번호/전자이메일 인증만 거칠 뿐 주민번호 등을 별도 수집하지 않고, ② 원화예수금은 국내계좌로만 출금될 뿐 해외계좌로 출금되지 않는 등 빗썸이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거주자 입증책임은 국세청이 부담 하며, 이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음**

2. 사건의 쟁점

쟁점 3- 과세요건 (비거주자, 과세표준) 에 대한 입증 책임

▶ 소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어느 과세물건이 어느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조세소송실무 제103면)

등기나 등록 등 공부상의 명의에 의하여 파악되는 법 형식 또는 외관상의 과세물건 귀속자가 사실상의 귀속자와 다른 경우 공부상의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였을 때 그가 동시에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함

이러한 법리에 기초할 때 원화 예수금이 국내 계좌로 출금되었다면 국내 계좌주가 소득의 실질적귀속자일 수도 있으므로 **국내 계좌 명의자와 부과대상이 된 비거주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누가 실질적 귀속자인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할 것임**

2. 사건의 쟁점

쟁점 3- 과세요건 (비거주자, 과세표준) 에 대한 입증 책임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부과 대상의 범위

▶ 필요경비 및 손비의 입증책임 원칙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따라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소극적 항목으로 작용하는
필요경비나 손비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

▶ 입증책임의 전환 가능성

판례는 구체적 경비항목에 대한 입증의 난이(난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그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자 측의
생활영역 내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증
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납세자 측에게 입증의 필요가 전환되는 경우를 인정하
고 있음(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2. 사건의 쟁점

쟁점 3- 과세요건 (비거주자, 과세표준) 에 대한 입증 책임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부과 대상의 범위

▶ 입증책임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 증명된 경우에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2. 사건의 쟁점

쟁점 3- 과세요건 (비거주자, 과세표준) 에 대한 입증 책임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부과 대상의 범위

▶ 사실관계

매매차익이나 경제적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원화예수금 출금합계액 전액을 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설정함

▶ 쟁점

'양도에 의한 차익' 또는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 여부는 기본적으로
취득가액과 매도가액간의 차액(취득가액 < 매도가액)임

가상통화는 최초에 유상취득하는 것이어서 '차익' 내지 '경제적 이익' 의 발
생 여부는 매도가액이 유상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임에도,
그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원화예수금 출금합계액 전액'을
기타소득액(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가능함

2. 사건의 쟁점

쟁점 3- 과세요건 (비거주자, 과세표준) 에 대한 입증 책임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부과 대상의 범위

▶ 입증책임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②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
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
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
9535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328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
12912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누1004 판결 등.)

2. 사건의 쟁점

쟁점 3- 과세요건 (비거주자, 과세표준) 에 대한 입증 책임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부과 대상의 범위

▶ 입증책임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③ 그러나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감(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2. 사건의 쟁점

쟁점 3- 과세요건 (비거주자, 과세표준) 에 대한 입증 책임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부과 대상의 범위

▶ 소결

- 코인이 존재할 경우 그 코인을 매수하거나 채굴함으로써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은 경험칙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입증 없이 원화예수금 출금합계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한 것은 입증책임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 특히 거래소를 통해 매수한 코인을 거래소에서 다시 매도한 경우에는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의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고 외부에서 코인이 거래소 지갑에 입고된 경우라면 입고된 시점의 코인 가격을 필요비로 추정 가능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필요경비를 공제한 차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2. 사건의 쟁점

쟁점 3- 과세요건 (비거주자, 과세표준) 에 대한 입증 책임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부과 대상의 범위

▶ 국세청의 반론 : 원화예수금 출금합계액 전액이 기타소득

- ①빗썸거래소 내에서 X코인을 매수 한 후 다시 빗썸거래소에서 X코인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수-매도가액을 각 파악 가능하더라도[거래소 내에서의 매수-매도],
- ②거래소 외의 지갑거래(지갑-지갑간 거래)로 X코인을 매수한 후 빗썸거래소에서 X코인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수가액을 알 수 없고[지갑거래로 매수한 후 거래소에서 매도], 이러한 경우와 같이 가상통화 거래로 인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빗썸거래소가 출금액 전액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했어야 함

2. 사건의 쟁점

쟁점 4- 원천징수의무 여부 ?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 사건의 쟁점

쟁점 4- 원천징수의무 여부 ?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2. 사건의 쟁점

쟁점 4- 원천징수의무 여부 ?

- 비거주자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자 및 그 대리인/수임인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127조 1항, 2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지급자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이어야 함
 - ① 기타소득에 가상통화 거래 차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빗썸은 가상통화 판매자(매도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② 빗썸은 '이용약관' 및 '입출금 서비스를 위한 이용안내'에 따라 구매회원 및 판매회원으로부터 대금 수령/지급 업무를 위임 받았을 뿐 **기타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음**
 - ③ 가상통화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없음

2. 사건의 쟁점

쟁점 4- 원천징수의무 여부 ?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⑥ 제119조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⑪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항을 적용한다.**

2. 사건의 쟁점

쟁점 4- 원천징수의무 여부 ?

- 국세청 반론
 -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원천징수의무 부담**- 소득세법 156조 6항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바, 빗썸거래소도 운영방식상 출금액에서 출금수수료를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출금수수료 선취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주장
- 소결
 -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서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나 가상통화거래소의 경우 아무런 법적 근거 없다는 점에서 양자를 같게 보거나 유추적용 할 수 없음

2. 사건의 쟁점

쟁점 5-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과세권 여부 ?

○ 한중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24조【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사건의 쟁점

쟁점 5-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과세권 여부 ?

○ 조세조약상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국내 과세 가능한 과세소득 불해당 /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비거주지국인 우리나라는 과세권 없으므로 거래소에 대한 원천징수는 위법부당함

▶ 국내거주자에게 부과할 수 없는 기타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무차별 조항에도 반할 수 있을 것임

한 중 조세조약 24조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차별을 둘 수 없음

2. 사건의 쟁점

쟁점 5-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과세권 여부 ?

○ 조세조약상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국내 과세 가능한 과세소득 불해당 /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비거주지국인 우리나라는 과세권 없으므로 거래소에 대한 원천징수는 위법부당함

▶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가능한 과세소득 불해당

비거주자가 중국인인 경우, 가상통화 거래이익을 소득세법상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으로 보더라도, 한 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서 과세가능한 과세소득(부동산 소득, 사업이익, 해운 및 항공운수,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예능인 및 체육인소득, 연금,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나라 과세권 없음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더라도, 한 중 조세조약 22조 기타소득 1항에서는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주: 중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므로 우리나라는 과세권 없음

2. 사건의 쟁점

쟁점 5-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과세권 여부 ?

○ 소득세법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건의 쟁점

쟁점 5-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과세권 여부 ?

○ 국세청 반론 : 소득세법상 비과세.면제 등 신고해야함에도 하지 않음

소득세법 156조의2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거주자가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함에도, 빗썸의 비거주자 회원은 위 신고한 사실 없고, 따라서 빗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2. 사건의 쟁점

쟁점 5-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과세권 여부 ?

○ 소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비과세 관행/신의칙 주장이 가능할 것임

• 비과세 관행 관련하여 판례는 단순한 과세누락과 구별하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 관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임(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

•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요건 중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입증해야 함(서울행정법원 2004. 8. 17. 선고 2003구합29491판결)

2. 사건의 쟁점

쟁점 5-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과세권 여부 ?

○ 소결

➢비거주자가 중국인인 경우 한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과세권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움

▪설령 이를 위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소에게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선례가 없고 과세 대상이라는 점 역시 불분명한 점에서 소득세법상 각종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여지가 있음.

IV. 결론

감사합니다

 BARUNLAW
법률법인(유한) 바룬

53

기조발표 ③

암호자산 과세의 조세법적 제문제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

암호자산의 과세문제

- 양도차익 과세를 중심으로 -

오 문 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2020. 02. 21.



한국조세정책학회
 Korean TaxPolicy Association

목 차

- I. 선결문제
- II. 암호자산은 현행 조세법상 과세할 수 있는가?
- III. 암호자산 과세의 해외사례
- IV. 빗썸 과세사례
- V. 향후 암호자산 과세의 바람직한 모습
- VI. 결론

발표자 약력

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법학박사(조세법)
 경영학박사(세무회계)
 행정학박사과정 수료
 심리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I. 선결문제

1. 명칭의 문제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의 사례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8-269호): 암호화자산/ 가상통화
 -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9-1> 블록체인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산출되는 암호화 자산을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산업활동
 - 각종 실물자산을 매매 및 중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편의를 위해 전자적 증표로 변형한 경우
 -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통화와 암호자산을 병기
 - 대상자산을 가상통화와 암호자산으로 함께 쓰는 것으로 결정
 - ※ 가상통화만 사용할 경우 실제 통화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데도 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주게 되는 측면이 있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만 사용한다면 일부통화의 기능을 하는 측면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차원에서 두가지를 병기하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
 -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은 '가상통화', '가상화폐' 라는 용어를, 전문가군에서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
- ▶ 종합해보면 대상자산은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암호화자산)등으로 불리고 있음

I. 선결문제

1. 명칭의 문제

● 가상 vs. 암호 : '암호'라는 단어를 추천

- ✓ '가상'이라는 용어는 비트코인류 말고도 신용카드와 예전의 폐쇄 시스템에서만 사용되던 도토리 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기존에 존재하던 '가상'의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암호라는 용어가 더욱 적절
- ✓ 대상 자산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과정이 필요함
- ✓ 가상화폐라는 용어가 암호화폐라는 용어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판단됨
→ 비트코인류를 설명하는 용어로는 가상화폐보다는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상대적으로 적절

● 통화·화폐 vs. 자산 : '자산'이라는 단어를 추천

- ✓ 이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하 비트코인류)가 화폐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면은 적음
- ✓ 처분을 한다면 현금으로 전환되어 일반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역잠재력(service potential)'이 존재
- ✓ 이러한 '자산'의 특성은 비트코인류의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

2

I. 선결문제

2. 암호자산의 가치평가문제

● 각 코인별 가격차이의 원인

- ✓ 암호자산의 경우 투자 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것처럼 보이며, 가격이 내리면 왜 내리는지, 오르면 왜 오르는지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 buy(undervalue), hold, sell(overvalue)의 의사결정
 - 코인발행 물량이 유한한가?
 - 각 코인별 블록체인 기술의 수준?
 - 암호화폐의 익명성에 대한 기술수준
 - 기초자산이 있는 암호자산 (ex.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 ✓ 향후 만약 암호자산의 규제가 있다면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 등

3

I. 선결문제

3. 비트코인류의 진화 모습

● 암호자산의 현재 모습

- ✓ 비상장주식이 IPO를 통하여 상장하는 것처럼 암호자산은 ICO를 통하여 거래소에서 거래
- ✓ 일부의 전문가들은 현재 우후죽순처럼 많은 암호자산이 향후 많은 부분 소멸되고 극소수의 암호자산이 살아남아 화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
- ✓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암호자산을 발행하거나 암호자산을 통한 거래를 함
 - ※ 자국화폐 물리바르화의 가치가 폭락한 베네수엘라는 그 대안으로 페트로코인을 발행하였으나 아직까지의 상황은 좋지 않다.
 - ※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등 자국통화의 신뢰도가 추락한 나라 들은 비트코인 거래를 더욱 선호
- ✓ 비트코인이 경제적위기에 처한 국가의 화폐를 대체하는 위기화폐(crisis currency)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 ▶ 위기화폐로서의 암호자산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된다는 점에서 로컬화폐(local currency)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화폐로서 사용되려고 한다면 가치의 안정은 필수적이다.

4

I. 선결문제

4. 자산성 여부

● 암호화폐의 자산성 여부

- ✓ 자산이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현재의 자원
 - 과거사건의 결과 : 암호자산의 채굴 또는 취득
 - 기업이 통제: 배타적 사용
 - 현재의 경제적 자원: 현재의 용역잠재력

대법2018도3619, 2018.05.30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②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인 "OOOOOOO.com"(이하 '이 사건 음란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사건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 ▶ 암호화폐는 자산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5

I. 선결문제

5. 어떤 자산의 범주에 속하는가?

● 한국회계기준원의 가상통화 분류

- ✓ 배경 및 질의
 -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를 보유한 회사가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하고 있다.
 - 회사가 보유한 가상통화는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었으며, 관할 기관(중앙 당국)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고, 보유자 와 다른 당사자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가상통화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는가?
- ✓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신
 -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
- ✓ 판단근거
 - ①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 ② 관할 기관 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 ③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상통화로 한정

6

I. 선결문제

5. 어떤 자산의 범주에 속하는가?

● 재고자산으로의 분류

- ✓ 판단근거 :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 ✓ 암호자산거래소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증권회사가 상품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서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볼수있으므로 재고자산이라는 분류는 적절

● 무형자산으로의 분류

- ✓ 판단근거 :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그 기업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
- ✓ 가상통화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며,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어려움 → '계약'에 초점
- ✓ 가격이 움직이는 형태는 주식의 성격과 많이 닮아있음
 - 금융상품의 정의규정에 계약이라는 특징을 전제로하여 금융상품을 정의하는 것은 암호자산이라는 신종자산이 출현하기 이전의 정의
 -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에 포함할수 있도록 그 특징에 계약이라는 조건을 전제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자산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를 생각해 볼수 있음

8

I. 선결문제

5. 어떤 자산의 범주에 속하는가?

● 한국회계기준원의 가상통화 분류_계속

- ✓ 판단근거_계속
 - 가상통화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며,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 질의대상회사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상통화는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그 기업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 한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7

I. 선결문제

5. 어떤 자산의 범주에 속하는가?

● 제안

- ✓ '화폐'로서의 성격
 - 암호화폐는 한국은행법 제47조, 제47조의2, 제53조 등에 의하여 화폐가 될 수 없음
 - 화폐는 일반적으로 교환수단, 가치척도, 가치저장, 지급수단, 회계기록의 단위로 사용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화폐의 가치척도의 수단은 '가치의 안정'을 전제로 하는 바, 현재의 상황과 같이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한 암호화폐가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 하지만 미래에도 암호화폐가 현재처럼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불리 장담할 수는 없다.
 - ※ 비트코인의 경우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변동 폭이 크다는 점이 개선될 수 있다면 향후 화폐로서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
 - ✓ '주식'으로서의 성격
 - 가치변동성에 치중하여 양도차손익을 보게되는 주식과 그 성격이 닮아있음
 - ✓ '일반재화'로서의 성격
 - 비유하자면 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재화로 보는 논리도 세우기가 힘들다
- ▶ 현재의 상태로는 주식과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른 '신종금융자산'이 가장 적절한 정의로 보임

9

II. 암호자산은 현행 조세법상 과세할 수 있는가?

1. 양도차익의 과세

● 법인의 경우

- ✓ 법인세법의 과세체계상 '순자산증가설'을 따르고 있음
- ✓ 암호자산의 양도차익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한다면 현행법상 아무문제 없이 과세할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에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암호자산의 양도차익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자연인의 경우

- ✓ 소득세법의 과세체계는 '소득원천설', 즉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 현행 세법으로는 어려움
- 단, 소득세법 제21조 각호에서 암호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열거하고 있지 않은 한 각호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동조 제21호("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를 당연히 적용할 수는 없음
-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하기가 어려움
-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 현행 세법으로 어려움
-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 암호자산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열거되어 있어야 함

III. 암호자산 과세의 해외사례

1. 해외사례

● 영국

- ✓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거래의 빈도와 행태 등을 통해 해당 거래가 금융거래(financial trade)인지 투자(investment)인지를 구별
- ✓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이득세가 부과

● 일본

- ✓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가상화폐 거래가 사업소득 등의 기인이 되는 행위에 부수된 것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
- ✓ 일반적인 개인이 암호자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잡소득으로 분류
※ 일본의 소득세법상 잡소득은 우리나라의 기타소득과 그 의미는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되어 우리나라의 기타소득과는 성격이 다름

● 스위스

- ✓ 가상화폐 거래에 대하여 자본이득과세가 없고 가상화폐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III. 암호자산 과세의 해외사례

1. 해외사례

● 미국

- ✓ 암호화폐를 주식, 채권등의 투자자산과 같은 일반적인 자본자산(capital asset)으로 분류
- ✓ 암호화폐로 발생한 손익은 자본소득으로 과세
- ✓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류되는 재고자산 또는 기타자산(inventory and other property)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
- ✓ 급여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 독일

- ✓ 민간화폐와 유사한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이라고 명시하고 이에 따라 일종의 금융자산으로 취급
- ✓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독일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라 사적판매거래(private sales transaction)로 인정
- 1년 이상 보유 시 자본이득(capital gains) 과세가 면제
- 1년 미만 보유자라도 거래 규모가 60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 ✓ 연간 600유로 이상의 자본이득은 25%의 단일 세율이 적용
- ✓ 개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법적 형태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적용을 받는데, 사업수익으로 보아 과세

IV. 빚썸의 과세사례

1. 과세관청의 관점

● 암호화폐의 자산성

- ✓ 과세관청이 암호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나선 것은 암호화폐의 성격에 대하여 나름대로 확신을 가진 것
- ✓ 암호화폐는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과세하기로 하였음

● 근거조항의 적용

- ✓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 과세관청은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양도차익을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으로 보았음

1. 과세관청의 관점

● 원천징수의무자

- ✓ 소득세법 제156조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2.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 ✓ 과세관청은 빗썸을 투자중개업자로 보고 빗썸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았다.

● 소득의 측정

- ✓ 비거주자가 빗썸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 인출한 금액 전부를 암호화폐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고 있다는 것

2. 과세관청의 관점에 대한 이견

● 원천징수의무자

- ✓ 조세법의 해석원칙으로서 엄격해석에 따르면 암호화폐라는 자산의 성격이 세법상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유가증권으로 볼 수도 없음
- ✓ 동일한 논리로 빗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과세소득 산정의 문제

- ✓ 이번 과세기준금액은 비거주자가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였다고 전해진다
- ✓ 인출금액은 양도차익 금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목적적합하지 않은 금액임

2. 과세관청의 관점에 대한 이견

●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 정부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암호화폐는 신종자산으로서 이번 과세의 근거로 본 자산분류처럼 "부동산 이외의 자산"으로 간단하게 자산으로 포섭할 것은 아님
- ✓ 자산에 대한 명칭도 세법적 측면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문제가 거주자보다 먼저 이루어짐

- ✓ 이번 과세는 국내기업인 빗썸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로서 암호화폐에 대하여 거주자보다 비거주자에게 먼저 과세가 이루어진 것
 - ※ 빗썸이 비거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세부담은 국내기업인 빗썸에게 갈 가능성이 크다
- ✓ 비거주자에게 과세를 먼저한 것은 내외국인차별금지(OECD 모델협약 24조)라는 측면에서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 ✓ 실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국가에서 조세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측면의 보복 등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부분

1. 암호자산의 양도차익

● 법인의 경우

- ✓ 추가적인 입법과정 필요 없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

● 자연인의 경우

- ✓ 사업자의 경우
 - 현행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같은 분류가 별도로 되어있지 않고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됨
 -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
-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암호자산을 열거
 -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7호에 암호자산의 처분으로 얻는 이익을 열거

● 제안

- ✓ 암호자산의 취득가액 추적이 어려워 이를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
 - 이는 양도차익 금액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필요경비의 과세논리는 '인적 용역'에 대한 공제임
- ✓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모두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타소득보다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함이 적절

2. 거래세

●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한계점

- ✓ 암호화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기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움
- ✓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 거래세 도입 제안

- ✓ '양도차익'이 아닌 암호자산 거래 시 과세하는 방안
- ✓ 암호자산 과세 도입 초기에 적절한 방법
 - 현재로서는 암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완벽하게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움
 - 차익 또는 차손을 결정할 필요가 없고 단지 '거래의 존재'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임
- ✓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임



1. 결론

●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

- ✓ 양도차익에 국한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라는 과세대원칙에 부합함
- ✓ 암호자산이 화폐의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는 점에서 과세불가론을 주장하기도 함
 - 누군가는 암호자산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기도 하는 상황에서 과세불가론은 설득력을 얻기 힘음

● 관련 제도의 정비가 급선무

- ✓ 조세법에 암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야 함
- ✓ 또한 그 소득을 발생시키는 대상이 자산인지, 자산이라면 어떤 범주에 속하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함
 -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원천설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법인세법에서는 그 자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예, 평가방법)이 있음
- ✓ 과세를 함에 있어 관련 입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암호자산을 제도권으로 들여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다고도 보여짐
 - 단, 암호자산의 문제는 꾸준히 존재하여왔고 투자수요가 소멸될 것도 아니라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임
 - 따라서 합당한 입법을 통해 적절한 과세를 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맞는 올바른 조세가 이루어져야 함

토론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용민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전 조달청장, 전 기재부 세제실장)



서연희
법무법인 자유 변호사



최호창
한빛코 준법감시인(전무이사)

가상화폐 과세방안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

1. 주요국가의 가상화폐 과세현황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의 경우 스위스를 제외한 주요국가의 과세당국은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asset 혹은 property)으로 파악하여,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함¹

미국은 미국 국세청(이하 'IRS')에서 2014년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이후, 미국 공인 회계사협회(AICPA)에서 체인 스플릿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과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2018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에 따라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인 과세 처리 방침이 공표된 상태임

- (가상화폐의 속성)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파악함
- (가상화폐 거래)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로 교환 가능한 경우엔 과세 측면에서 법정화폐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됨

영국 과세당국(HMRC)은 2018년 12월 정책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의 속성에 대해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폐'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가상화폐 거래)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거래의 빈도와 형태 등을 통해 해당 거래가 금융거래(financial trade)인지 아니면 투자(investment)인지를 우선 구별해야 함
- 만약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가상화폐 매매차익은 개인의 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분류되고, 투자에 해당한다면 자본이득(capital gain) 과세 대상임

독일은 가상화폐를 일종의 '경제적 자산'(economic asset)으로 파악함

-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EStG) 23조에 따라 사적판매 거래(private sales transaction)로 인정되어 가상화폐를 1년 이상 보유 시 자본이득(capital gains)

과세가 면제되며, 1년 이내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도 거래 규모가 600유로를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거래규모가 600유로를 넘는다면 독일의 자본이득(Abgeltungsteuer)에 대한 세율인 25%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사회적 연대 세금이 추가되므로 해당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실제 26.375% 세율이 적용됨
- * 독일의 경우 가상화폐를 '동산'의 일종으로 보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입장이었으나, 2015년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가상화폐는 부가가치를 더하는 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에 따라, 2018년 자국 내에서 가상화폐가 지급결제수단으로 쓰일 경우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세 정책을 수정하였음

스위스는 가상화폐를 현금 내지 동산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개인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포함시킴

- (가상화폐 거래)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재산세) 가상화폐 매매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가 없는 반면, 가상화폐를 현금 내지 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개별 주(canton)에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 규모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함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잡소득)으로 분류하여 최대 55%의 세율을 부과하면서 탈세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일본은 한국이 열거주의에 따라 8가지 항목으로 소득세 부과 수익을 제한한 것과 달리 모든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가상화폐로 발생된 수익 역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됨
- 일본 국세청은 2017년 9월 가상통화를 사용해 생긴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해서 기타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구분한다는 공식 의견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
-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에 따라서 5~4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지자체 정부가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10%까지 더해지므로 최대 5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55% 고율 과세에 대해 블록체인 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며 2019년 3월 까지 과세 당국에 미신고된 가상화폐 수익이 10억 엔(약 1,084억원)에 달한다는 아사히 신문 보도가 나오기도 함
- 탈세를 막기 위해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IT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준용하는 것임
- 주식거래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서 일본 과세당국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며, 세율은 20.315%(국세 15.315% + 지방세 5%) 단일세율을 적용함
- 일본 정부는 탈세 방지를 위해 세율 인하보다는 엄격한 감독에 방점을 찍고 있는 데 반해, 민간 IT업계는 정부가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감독보다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음

¹ 이재화, "주요국 가상화폐 과세 현황", 국회 입법조사처, 2019.7.

2. 현행 세법에 의한 가상화폐 과세 이슈

1) 과세 개요

국세청은 2019년 12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하여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

- 비거주자가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뒤 출금한 원화예수금(3,325억원)을 국내원천 기타 소득으로 보고, 빗썸이 이를 비거주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

과세대상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 근거조문
 - 소득세법 119조 12호 마목: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소득세법 119조 12호 카목: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암호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6항
- * 소득세법 119조 제11호(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핵심 쟁점

과세대상 여부

- 암호화폐의 자산성 여부 문제
 - 암호화폐는 신종자산으로서 화폐인지, 유가증권인지, 재고자산인지, 무형자산인지 등에 대한 세법적 측면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국제적으로도 최근인 2019년 6월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결론
 - 2015년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가상화폐는 부가가치를 더하는 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독일이 2018년 가상화폐가 지급결제수단으로 쓰일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세한 것은, 가상화폐의 성격이 자산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수단(화폐)의 기능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국내자산'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과세가능한지 여부 문제
 -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그 과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국내자산이란 용어는 포괄적이고 광범한 단어로서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대상의 명확성과 상치될 소지가 있음. 예를 들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구체적 사안의 적용에 있어 상속세법에서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거주자는 과세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문제
 - 거주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거주자에게 과세를 우선한 것은 내외국인 차별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음
 - OECD 모델조약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원천지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또는 거주자)에게 동일한 요건 하에서 자국의 국민(또는 거주자)보다 과중한 조세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무차별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빗썸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되는데, 빗썸은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자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주장
-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빗썸은 대리 또는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
- 소득세법 제156조 제6항에서는 유가증권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빗썸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아니라는 주장
 - 대법원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법률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인정하지 아니함

3. 향후 가상화폐 과세방안

가상화폐에 대한 향후 과세방안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음

: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과세

- 주요 외국은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 자본이득(capital gains)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조세이론상으로도 가상화폐의 거래 이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현실적으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산정문제가 발생
 - 가상화폐의 주요한 특징은 익명성으로서, 과세거래의 포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 내용의 파악이 용이하나, 장외거래 이용자는 거래 내용의 파악이 곤란하고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산정이 어려움
 - 법인은 모든 거래가 장부에 의해 기록되어 객관적 증빙에 의한 필요경비 산정이 가능하나, 개인은 거

- 래소 외에 장외거래(P2P)하는 경우가 많아 이전 취득가액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주식은 주로 거래하는 증권회사가 취득 및 양도관련 기록을 갖고 있어 양도차익 파악이 가능하나, 가상화폐는 여러 거래소에 분산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거래소간의 정보도 제한되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파악이 어려움
-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고 하루에도 시간대별로 가격변동이 심해 기준시가를 책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기타소득세 과세

-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복권당첨소득 등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인데,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따라 일어나는 가상화폐 거래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원리상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주요 외국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본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어,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데, 장외거래의 경우 거래 내용의 포착이 어려운 문제가 상존.
- 또한 기타소득은 건별로 과세하므로 양도차손에 대한 소득통산이 안되고, 현행 주식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손의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현행 소득세법에는 비거주자의 경우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거래자는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순소득과세원칙에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이익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에 따라서 5~4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세 10%까지 더해지므로 최대 5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가상화폐 거래의 음성화 등 탈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거래세 과세

-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유사한 방식의 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임
-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에 대해 상장주식은 0.25%, 비상장주식은 0.5%(2020.4.1.이후는 0.45%)의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음.
-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과세하는 논거는 아직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과세인프라가 갖춰질 때 까지는 거래금액에 대해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이후 과세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주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전환
 - 가상화폐거래세는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장내거래 유도를 위해 장내거래는 장외거래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예: 거래소시장 거래분 0.1%, 장외시장 거래분 0.2%)
 - 가상화폐거래세율의 차등화로 거래소시장의 거래가 대세를 이루어 과세인프라가 갖추어지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함
- * 취득가액 입증가능성 검토

필요경비 산출을 위한 취득가액 입증가능성 검토를 위해서는 코인의 ①국내거래소 지갑 간 이전, ②해외거래소-국내거래소 지갑 간 이전, ③개인지갑-국내거래소 지갑 간 이전, ④개인지갑 간 이전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일차적으

로 지갑주소의 식별가능성에 관한 문제임.

- 또한 지갑주소의 식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프라이빗 코인(일명 '다크코인')도 검토 대상임. 즉 코인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전자지갑 주소의 식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논의의 전제로서, 취득가액에 관한 세원포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즉, ①전자지갑 주소의 식별가능성, ②역외 주소의 경우, 조세조약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구속력 있는 조세협약을 통한 국가간 과세자료 공유가능성(추적가능성)

1) 국내거래소 지갑 간 이전

취득가액 확인이 가장 용이한 거래형태는 '국내거래소 내' 또는 '국내거래소 간' 거래임. 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일차적으로 회원가입절차에서 휴대전화번호/이메일계정/네이버·카카오등의 계정 연동 등을 통해 본인신원확인(KYC)*을 거치고, 실명계좌를 사용하는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의 경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해 내국인임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내역까지 실시간 파악되는 등 FIU의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게 됨. * Know Your Customer / ** Anti-Money Laundering

기술적으로 보면, 각 거래소는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을 통해 전자지갑 주소를 발급하며, 각 전자지갑 주소마다 해당거래소임을 식별하도록 하는 코드를 삽입함으로써 어느 거래소인지 '특정'되도록 조치할 수 있음. 예컨대, 현재 법무부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등에 관한 범죄수사를 위해 각 거래소에 '거래소 지갑주소 식별정보'를 요구한 바 있으며, 각 거래소들은 전자지갑 주소에 고유 식별코드를 삽입함으로써 범죄의뢰자가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특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와 같이 국내거래소 내에서의 거래행위 또는 국내거래소 간의 거래행위의 경우, 각 거래소별 전자지갑 주소가 식별됨으로써 해당 거래소를 통해 과세관청은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2) 해외거래소 지갑 - 국내거래소 지갑 간 이전

해외거래소 전자지갑과 국내거래소 전자지갑간 코인 이전의 경우, ①일차적으로 해당 지갑주소가 어느 해외거래소의 지갑인지를 식별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②이차적으로는 특정 해외거래소의 지갑으로 식별되더라도 해당국가와의 조세조약 등을 통해 과세자료 공유를 위한 국제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어야 함.

우선 해외거래소 지갑주소의 식별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해보면, 이는 코인 자체의 기술적 특성과 관련 있는데, 익명성이 강화된 '프라이빗 코인'(private coin)²의 경우 믹싱, 텀블러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 코인의 지갑출처를 익명화하는 것이 가능함. 예컨대 X라는 프라이빗 코인이 A지갑에서 출금되어 체인(chain)을 통해 B지갑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믹싱, 텀블러 등의 기술적 조치가 작동하는데, 결과적으로 B지갑에 X코인이 이전되었더라도 외부에서는 A지갑이 아닌 전혀 별개의 지갑주소로부터 출금된 것처럼 익명화되는 것임.

반대로 프라이빗 코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외거래소 지갑주소의 식별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이나, 국내거래소에서 거래한 기간에 대해서만 별도 과세가 가능할 뿐 역외 이전된 시점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조약이 없는 이상 과세자료 확보는 물론 과세권이 없어 과세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개인 지갑 – 국내거래소 지갑 간 이전

: 개인지갑 → 거래소지갑으로의 코인 이전(입금)

(1) 가상자산 사업자가 발급한 개인 지갑인지 여부 검토

개인 지갑과 국내거래소 지갑 간 이전은 '개인 지갑'에 대한 세원 포착이 핵심적인 선결과제라고 판단됨. P2P방식의 장외거래를 통해 코인을 매수·교환하거나 무상 이전 받은 후 거래소 지갑으로 코인을 이전하는 경우, 거래자는 양도소득세나 기타 소득세 부과시 그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입증해야만 과세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임.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인 지갑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지갑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제도권 내 사업자의 전자지갑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갑의 거래내역을 금융당국이나 국세청이 추적할 수 있어 과세자료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 그 지갑을 통한 입출금내역에 대한 공신력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예컨대 삼성전자가 '19년에 출시한 갤럭시S10 휴대폰에는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라는 디앱이 탑재되어 있어, 삼성전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 휴대폰에 탑재된 전자지갑 내 코인 이전내역에 대해 거래자 개인이 필요경비 입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발급한 개인 지갑의 경우에는 거래자가 지갑내 코인의 이전내역을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해당 자료의 공신력을 인정할 것 인지는 불확실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국세청의 세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임.

(2) 개인 지갑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간 소요

위와 같은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법률 시행 이후에도 다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개인 지갑에 대한 과세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할 것임

또한 과세인프라의 '구축 정도' 역시 문제가 됨. 거래소 내 거래로 한정하더라도, 1년간 적게는 수십회에서 많게는 수만회씩 거래하는 거래자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개별 거래내역들에 관한 필요경비를 어떻게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 감히 추측하기 어려움.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시스템인 TIS의 경우에도 4~5년 단위로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반복적으로 정비를 해내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파악하더라도 그 필요경비 입증에 필요한 과세인프라 구축에는 최소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4) 개인 지갑 간 이전

거래소를 전혀 경유하지 않는 P2P 방식의 개인 지갑 간 거래는 장외에서 현금을 지급한 후 개인 지갑간 거래를 통해 코인을 이전시킬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한 과세자료 확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원 포착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됨. 특히 거래대상 코인이 프라이빗 코인이라면 양도인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임.

따라서 '개인 지갑 간 이전'은 조세정책상 지하경제로의 편입을 의미하며, 과중한 세율로 거래소 거래자들에게 과세할 경우 익명성을 강조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일본과 같이 장외 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검토의견

- 양도소득세는 조세원리상 타당하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으나, 과세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 기타소득세는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로서 조세원리상 맞지 않는 문제점과, 주요 외국의 경우 대부분 자본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어 글로벌 기준과도 상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 가상화폐 거래의 현실을 감안하여 일단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하여 과세인프라 정비와 세수 확보를 해나가면서, 향후 과세인프라가 정비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신규입법(가상자산거래세법)보다는 현행 증권거래세법의 일부 조항 개정이 바람직

2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튜브(TUBE), 피벡스(PIVX) 등 익명성이 강화된 프라이빗 코인을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다크코인'(dark coin)이라 명명한 바 있음

암호화폐와 세제

서연희 법무법인 자유 변호사

1. 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즘, 생명공학이나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들은 우리에게 친밀하거나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사해 보이는 기술혁명이 우리에게 머나먼 이야기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현실은 숨가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로봇이 서빙을 하고 학생들은 무인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며, 피자배달 역시 무인자동차가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지점은 아마도 대량실업 또는 일정 직업군의 무용화일 것 같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21세기를 위한 제언”에서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방식의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같은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체계를 완전히 재편하면서, 결국에는 근본적인 세계 개혁이 불가피해질지도 모른다. 가령, 그때 가서는 달러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국가 통화나 화폐로 명확히 교환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세금, 아마도 정보(미래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일 뿐 아니라 수많은 거래에서 교환되는 유일한 품목)에 대한 세금을 창안해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처럼, 우리는 미래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될 암호화폐와 이에 대해 과세방안등 중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2. 암호화폐와 세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관청의 표어처럼, 암호화폐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 13월 28일 기준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940억 달러로 2018년 1,323억 대비 47%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600여종의 암호화폐가 있고 각 암호화폐들의 사용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LGP(Legends cryptocurrency)라는 암호화폐는 라스베가스의 클럽에서 술과 춤을 추는데 지급할 수 있고, 일종의 vip패스의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상점에서 이를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Solar Dao 같은 암호화폐는 글로벌 태양광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이윤을 배분하는 기능을 합니다.¹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크지만 법정화폐로 교환이 되고, 막대한 성공 또는 실패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화폐일까요, 증권이나 금융상품이나 새로운 자산일까요? 암호화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형태나 기능이 다양하여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3. 빚셈 과세 사례 및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문제점

발표자들께서 이미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빚셈 거래소에 대한 803억의 원천징수세 및 부가세의 부과는 암호화폐의 정의 및 존재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암호화폐라는 불법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새로운 디지털 정보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받아 법의 영역으로 등장하는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빚셈에 대한 과세는 암호화폐를 일단 (비거주자에 대해) 국내원천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²으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자산의 일종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세관청은 빚셈이 소득세법 제156조 제6항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라고 은 판단하고 있습니다.³

첫째, 발표자께서 암호화폐 거래금액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국내세법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암호화폐의 거래로 인한 차익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기타소득규정은 포괄주의적 규정이므로 앞서 발표하신 바와 같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대에 있어서 많은 금융파생상품이 발생되고 그때마다 세법을 개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은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는 한편, 입법의 빈틈을 타고 발빠른 이익선취가 가능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등과 같이 어느 정도의 포괄주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둘째, 과세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쟁점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 같습니다. 일단 암호화폐의 성질이 규정되면 다양한 입법 및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Cryptocurrency & Robots:How to tax and pay tax on them, Sami Ahmed, J.D., Yale Law School, December 6, 2017

2 소득세법 제 119조 12호 마목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소득세법 119조 12호 카목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3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 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발표자들에게서 이미 다양한 해외의 입법례를 소개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입법례를 분석하면 사실상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경제적 효과와 성질을 분석하여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와 기존 법체계의 기준에서 판단하여 규제대상 또는 불법의 영역으로 처리하는 두 가지 다른 법적 접근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 영국이나 미국등은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나라들로 미국은 ICO 토큰처럼 증권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법의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자산으로 판단하되 모든 암호화폐를 과세대상으로 보지는 않고 이를 매매, 지급, 수취하여 이득이 발생하면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⁴ 스위스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현금의 성격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나 거래세등을 부과하지 않고, 이러한 친암호화폐적 정책으로 관련 산업의 유치 및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중국 및 우리나라의 경우는 ICO 금지등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하여 국회본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최근 빗썸의 과세등 법적 규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과세정책에 있어서 우선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을 정의하는데에서 출발해보고자 합니다. 암호화폐는 지불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투자자의 대상, 또는 금융상품으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화폐의 중요한 속성인 등가성이 경여되어 있어서 화폐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암호화폐는 국제회계기준(IFRS) 및 한국회계기준을 따라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무회계개념체계에 의하면 자산이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재무회계개념체계 4.3) 이고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K-IFRS 1038호, 2011.11.18.)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는” 경제적 자원이므로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의 요소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2018도 3619, 2018.05.30.)등에서도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째, 이와 같이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에 속한다고 정의하면 소득세법 제21조 7호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타소득의 대상인 무형자산은 저작권, 산업재산권, 영업상의 비밀등이 열거되어 있고,⁵ 암호화폐의 경우도 이와 같은 형태의 무형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법인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취급하여 순자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되, 개인의 경우는 그 거래태양과 기간등을 고려하여 사업적인 행위(영리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로 인정이 되면 사업소득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부가할 경우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가상자산 거래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 과세 대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차익은 사실상 자본의 투자로 인한 이익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나, 이는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필요비용등을 산정하여 공제하여야 하며, p2p 거래의 경우 사실상 그 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고 주식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매매차익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가 무형자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개인에 대해서는 각 거래양태에 따라 사업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부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가 먼저 이루어져 국제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실상 거래소가 이번 원천징수세 및 부가세를 먼저 납부 하더라도 소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거의 없어 국내기업이 그 부담을 모두 떠안는다는 점에서 과세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매매거래액이 위와 같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의 위험은 상존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사실상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논의와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위해 통일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암호화폐는 앞으로 통화의 개념을 바꾸어 놓을 유의미한 디지털 자산으로 관련 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5%~55%의 고율의 기타소득세를 추진한 뒤 거래의 탈세가 발생하고 있는 등, 과세제도는 산업발전의 측면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퍼스 위원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증권법을 어기지 않고 성공할 기회를 주자는 내용의 “Safe Port”구상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퍼스 위원은 2020. 2. 6.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블록체인 회의에서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최초 토큰판매 시점으로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받고, 그 기간동안 규제를 신경쓰지 않고 호위(Howey)⁶ 테스트 등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탈중앙화를 달성할 시간을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행초기에는 증권으로 분류되던 토큰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권성이 사라질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됩니다. 이와 같이 장기적 시각에서 산업전반을 보고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세 문제 역시 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거래가 은밀하게 숨어들지 않도록 적정한 정의 및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과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4 최근 IRS(Internal Revenue Service)는 2019. 10월 FAQ형태로 지침을 발표하고 및 납세자 letter를 보내 암호화폐의 과세 및 납세지도에 나서고 있다.

5 소득세법 제21조 제7호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6 Howey Test :1946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대 하위(SEC vs Howey), 투자계약의 판단기준은 ①권유자 또는 제3자의 노력만으로②이익을 기대하고③공동기업에④금전을 투자할 경우⑤해당 계약은 투자계약으로 간주되며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SEC의 규제를 받음

암호화폐의 공정하고 혁신적인 과세

최호창 한빛코 준법감사인

먼저 공정하고 혁신적인 과세를 주제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코인데스크코리아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발제자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여러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초발표를 해 주신 주신 박세환위원님, 한서희변호사님, 오문성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하여 학계와 법조계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자리에서 저는 거래소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앞서서 말씀하신 여러 주제에 대하여 실무적인 현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금법 개정과 함께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면서 당장의 시장의 입장은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2017년 하반기 이 시장에서 온 사회를 뜨겁게 휩쓸었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지 어언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했고 다단계, 먹튀 등 사기 등의 후유증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 또는 한탕주의의 곱지 않은 시각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광풍과 여러가지의 후유증을 딛고 블록체인이 가치를 믿고 시장은 나름대로의 변화를 겪으며 성장하고 성숙해 왔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닐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디지털 통화가 되었고 산업전반에 영향을 주는 실체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블록체인의 부가가치는 2030년기준 3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포럼)에서도 2027년 전 세계총생산(GDP)의 10% 수준이 8조달러가 블록체인 기술에서 파생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저희들은 이러한 가치를 믿고 바탕이 되는 코인이 코노미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 종사자로서 암호화폐가 과세의 대상으로 검토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전향적 전환입니다.

2017년 암호화폐는 아무런 실체도 없고 허무맹랑한 것이었고 가상증표라는 다소 허구적인 이름으로 치부되기도 하였습니다. 암호화를 바탕으로한 디지털코드의 개념으로 암호화폐의 개념이 널리 사용되다가 작년에는 국제회계기준상 재고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자산으로서 공인된 지위를 얻게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가상자산(FATF), 암호자산(G20)으로 명실상부한 자산으로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의 의미는 작은 의미에서는 세원확보수단으로서 암호화폐의 법적지위 마련이지만 더 큰 의미로는 블록체인의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권으로의 편입이라고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제적 역할과 합법적 산업 주체로서의 인정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금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함께 건전하고 신뢰성있는 시장 운영의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아무런 규제나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보니 무분별한 사업자의 난립이 있었고 그로인해 여러가지 폐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자율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업계 자정의 노력이 있었지만 금번 특금법 개정과 함께 과세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보호와 제도적 보완 장치가 병행하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프라 확충과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은행의 원화계정 제공은 암호화폐 과세에 필수적인 요건인 만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예탁금의 예금자보호장치, 고객자산의 분리예치 등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금융권에 준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세법상 금융투자업자에만 해당되는 원천징수의무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업무의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가상자산사업자는 암호화폐 유통시장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인프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기반 구축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하여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적용방안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양도소득세, 거래세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타소득세 적용 방안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이에 열거되지 않는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의 소득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는 수입금액에 일정률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은 계산함으로 단순하며 원천징수로 세원을 확보함으로써 과세의 편의성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라는 투자적 속성과는 거리가 있으며 투자손실 발생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소득원천에 대한 과세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 필요경비를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가장 주요한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열거주의로 되어 있는 현행 세법 체계상 기타소득에 암호화폐소득을 열거자산으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차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지니고 투자자는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신고를 통해 과세를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적용 방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얻는 실현된 자본이득으로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암호화폐 거래의 투자적 속성을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과세안이며 소득원천에 대한 과세의 기본적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대부분의 사례에서도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득단가 산정에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장외거래 또는 해외거래 등에서 취득한 경우 실효성있는 취득단가의 반영에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제취득가액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실제 적용까지는 현재까지는 많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없이 개별 소득자가 신고납부를 따르게 되어 징수에 따르는 행정력 소모가 발생하는 점도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현행 유가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세 인프라가 마련되기까지 유예하는 것이 솔직한 바램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시장이 안정되고 과세기반이 정착되기까지는 현행 파생상품시장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방식으로 하여 시장의 초기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손익통산(기간, 거래소, 범위)과 거래규모, 투자기간별 탄력적용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세 적용 방안입니다.

거래세는 가상자산의 매도시 현행 증권거래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과세가 가장 단순하고 징수가 간편한 방법이지만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자체에 과세함으로써 소득원천에 대한 과세의 기본적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이며 이러한 이유로 점차 축소 내지는 폐지 추세에 있습니다. 현행 증권거래세와 유사한 방법으로 장외와 장내세율에 차등을 두어 장내거래로

유인책을 마련해 볼 수 있겠으나 암호화폐 시장 운영에 필요한 시장조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시장 위축가능성의 우려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거래세를 적용한다면 암호화폐 과세 인프라 조성시까지 시장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적용하고 현행 파생상품시장조성자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조성의 거래에 대해서는 요건충족시 면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도세 과세 적용이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나 현행 시장 구조상 일시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보완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양도세 과세의 핵심인 취득단가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안과 세원확보장치를 마련 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과세방안이 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를 위하여 장내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상응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칫 조세회피를 위한 장외거래 또는 해외이전 등 시장 음성화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단계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채굴, 하이포크, 에어드랍, 디파이예치 등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시시각각 변화하고 다양화되어 가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포섭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과세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금법 개정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에서 관리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업이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과세는 단계적이고 세심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당장의 암호화폐 과세는 최소한으로 적용하면서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단기적인 세원확보 차원보다는 장기적인 시야의 로드맵을 가지고 산업기반을 키우고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성장시킨다면 보다 규모있고 실질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 • e • m • o

m • e • m • o



coindesk
KOREA

www.coindesk.com